

의안 번호	1927	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3. 24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3. 24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4. 5.(화)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4조 및 제35조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2조)
- 나. 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3조~제4조)
 - 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함
 - 위원은 추천을 받아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함
- 다. 심의위원회의 운영(안 제6조~제8조)
 -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
 - 비용 결정 시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함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 ~ 제35조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4조 및 제35조에서 의정비심의 위원회 구성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근거법규

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3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
1.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: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
 2.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: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, 재정능력,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,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
 3.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: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
-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34조(의정비심의회 구성)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의정비심의회 위원은 교육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사회단체, 통·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.
-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,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·의회의원과 그 배우자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④ 의정비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⑤ 의정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.

- 제35조(의정비심의회)의 운영 등)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.
-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에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.
-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,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. 다만,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.
-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⑦ 의정비심의회는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. 다만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